

## I. 의료기관 대상 Q&A

\* 아래 내용은 재택치료자 중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함

Q1. 일반관리군 전화상담·처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로 전화상담·처방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신청해야 하는지?

-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,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가능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시·군·구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

Q2. 재택치료자 전화상담·처방의 방식과 진료 절차는?

- 전화로 진료 가능하며,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,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

### < 전화상담·처방 세부 절차 >

- ① (진료 접수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내원기록, 확진자 정보 등 조회  
- DUR을 통해 **확진 여부 확인\***, 코로나 확진자 특정내역 구분코드 입력  
\*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등으로 확인
- ② (문진·처방) 유·무선 전화,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필요시 처방
- ③ (필요시 처방전 발급)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**동네약국** 또는 시군구 지정 **담당약국\***에 처방전\*\* 전송  
\*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·전달이 가능한 약국으로 명단은 **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** '전화 상담·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' 팝업창에서 확인 가능  
\*\* 처방전에 환자 전화번호 포함,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 등에 활용
- ④ (급여비 청구) 확진자 정보를 포함한 명세서를 심평원에 청구
- ⑤ (기타)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

Q3. 재택치료자 정보(확진자 정보 등)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?

○ DUR을 통해 확진자 여부 확인 가능

※ 확인이 안 되는 경우, 환자 본인에게 구두, 문자 등으로 확인하여 진료 가능

Q4.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?

○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 가능함을 안내

\*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에게 재택치료(집중관리군, 일반관리군) 통보시 안내문자를 통해 단기외래진료센터 명칭, 연락처 안내

○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하도록 환자에게 안내

Q5. 재택치료자가 입원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?

○ 재택치료자가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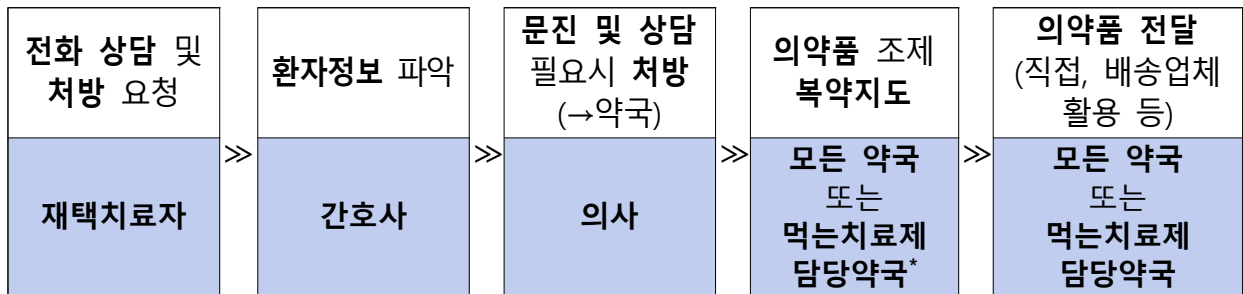
Q6. 진료 중 재택치료자가 응급한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하는지?

○ 재택치료자 진료 중 응급상황으로 판단될 경우, 의료기관에서 119로 연락

Q7. 진료 후 필요시 어떻게 처방전을 발급하는지?

- 인근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송부\*, 유선 확인
  -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고,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처방인 경우 참고사항란에 H/재택치료 코드 기재
  - \*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분리하여 작성
- 다만, 먹는 치료제인 경우 담당약국을 확인(hira.or.kr)하여 해당 약국에 송부

< 전화 상담 및 처방 절차 >



\* 먹는 치료제(팍스로비드)는 담당약국에서만 조제·전달이 가능하며, 담당약국 명단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(hira.or.kr)에서 확인 가능

Q8.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 관련 약도 동시에 처방 가능한지?

- 동시 처방 가능하며, 처방전을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으로 분리하여 작성
  -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처방인 경우, 참고사항란에 H/재택치료 코드 기재
  - \* 환자의 기저질환(예. 고혈압 등)이나 코로나19 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는 본인부담 있음

Q9. 코로나19 담당약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?

- 담당약국은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 상담·처방을 통하여 먹는 치료제 (팍스로비드)을 조제·전달하는 약국
- 담당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([www.hira.or.kr](http://www.hira.or.kr))에서 확인 가능

## II. 약국 대상 Q&A

### Q1. 재택치료자 약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?

-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하여 약 처방을 받을 경우, 약품비 및 약국의 조제료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과 정부예산(격리입원치료비)으로 지원

\* 환자의 기저질환(예. 고혈압 등)이나 코로나19 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는 본인부담 있음

### Q2. 재택치료자 처방시, 약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?

-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,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함

\* 격리수칙에 따라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 가능

- ①환자에게 대리인 수령 원칙으로 약국에서 수령하도록 안내\*, ②대리인 신분을 확인\*\*하고 연락처, 수령서명 등 수령인 정보 기록

\* 공동격리자가 대리인으로 수령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

\*\* 환자와의 유선 통화, 신분증 등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

- 다만, 독거노인,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'먹는 치료제 담당약국'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

### Q3.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·전달시, 적용되는 수가는?

-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하는 경우 조제·복약지도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,

- 약제 전달 및 수령 확인까지 하는 경우 투약·안전관리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

**Q4.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시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은?**

- 건보 및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심평원 시스템(청구포털)로 청구
- 외국인 등 건보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'입원(격리) 및 외래 비용 신청서'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청구

